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2월 12일

○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2일

3. 제안이유

-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하고(제3조)
- 당직수당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함(제4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을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직수당 1인 1회당 30,000원의 산정근거와 당직근무시간과 형태가 다른 토요일 당직과 일요일·공휴일 일직에 대하여 평일과 차등없이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